

# 중재 조항

계약에서 ICC 중재를 활용하고 싶은 당사자들은 아래 표준 조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

## 표준 ICC 중재조항

본 계약에서 혹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 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, 동 중재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1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

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조항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예컨대, ICC 중재규칙에서는 단독 중재인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중재인의 수를 규정하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중재지 및 언어, 본안에 적용되는 법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. ICC 중재규칙은 중재지 및 언어, 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

표준 조항을 수정하는 경우 그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불분명한 문구는 불확실성과 지연을 발생시키며, 이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가 방해받거나 더 나아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

또한 당사자들은 적용되는 법에 의할 때 조항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러한 요소에는 중재지 및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또는 장소들에서의 강행 요건들이 포함됩니다.

## 긴급중재인이 없는 ICC 중재

당사자들은 긴급중재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싶은 경우,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합니다:

긴급중재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

## 신속중재

ICC 중재규칙은 분쟁금액이 작은 사건에 대하여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당사자들이 신속절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싶은 경우,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합니다:

신속절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.

당사자들이 분쟁금액이 큰 사건에 신속절차를 적용하고 싶은 경우,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그 적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:

당사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 30 조 제 2 항 제 (b) 호에 따라 신속절차 규칙을 분쟁금액과는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다.

당사자들이 신속절차 규칙이 적용될 분쟁금액의 상한을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이고 싶은 경우, 위 조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:

당사자들은 신속절차 규칙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시점의 분쟁금액이 미화 [금액 특정]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 제 30 조 제 2 항 제 (b) 호에 따라 신속절차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다.

## 중재판정 공개를 배제한 표준 ICC 중재조항

본 계약에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, 같은 중재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1명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 또는 절차명령은 공개되지 않는다.

### 다단계 조항

ICC 중재는 먼저 조정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한 후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당사자들이 ICC 중재와 ICC 조정을 조합한 단계적 분쟁해결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, ICC 조정규칙과 관련된 표준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(88-91 면 참조).

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예컨대, 중재는 전문가 또는 분쟁 위원회의 예비적 절차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아가, ICC 중재를 사용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중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ICC 국제 ADR 센터를 통하여 전문가를 제안 받도록 정하여 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

이상과 같은 또는 다른 서비스의 조합을 위한 표준 조항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:

**<https://iccwbo.org/dispute-resolution-services/>**.